

< 붙임 1 >

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 목록

| 구 분 | 건축자재 생산업체 | 건축자재명 | 오염물질 방출량 TVOC 방출량(mg/ m ² · hr)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페인트 | 1. (주)금강고려화학 | 센스멜 MT3370 | 8.225 |
| | 2. (주)디피아이 | 슈퍼에나멜 백색 | 5.372 |
| | 3. (주)디피아이 | 크린폭시300 | 6.597 |
| | 4. 건설화학공업(주) | 글로리텍스 | 5.905 |
| | 5. 건설화학공업(주) | KCI워터락 | 7.182 |
| | 6. 삼화페인트공업(주) | 수성아크론 | 8.292 |
| | 7. 삼화페인트공업(주) | 수용성우레탄락카 | 7.279 |
| | 8. 벽산페인트(주) | 아쿠아 락 | 11.822 |
| | 9. 벽산페인트(주) | E Floor Single Top | 5.732 |
| | 10. 벽산페인트(주) | E. Floor Top | 14.687 |
| 접착제 | 1. (주)오공 | 825 | 16.000 |
| | 2. (주)오공 | SB1100 | 28.045 |
| | 3. (주)대흥화학 | SR-325 | 17.009 |
| | 4. (주)동부정밀 | YS-303 | 13.044 |

〈 붙임 2 〉

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11조 규정
및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방출기준

□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11조 오염물질방출
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규정

-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(이하 “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”라 한다)를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.
- ② 다중이용시설을 설치(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)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□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방출기준(mg/m²·h)

| | 접착제 | 일반자재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포름알데히드 | 4 이상 | 1.25 이상 |
| 휘발성유기화합물 | 10 이상 | 4 이상 |

- ※ 비고 : 1. 일반자재란 벽지, 도장재, 바닥재, 목재 및 그 밖의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.
2.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말하며,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다.

〈 붙임 3 〉

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적용대상 17개 시설군

| 다중이용시설 | 비 고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하역사 | 출입통로, 대합실, 승강장, 환승통로 포함 |
| 지하도상가 |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|
| 여객 자동차터미널 대합실 | 여객 자동차터미널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|
|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| 공항시설이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|
| 항만시설중 대합실 | 항만시설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|
| 도서관 |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|
| 박물관 |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|
| 미술관 |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|
| 의료기관 |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|
| 실내주차장 |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(기계식 제외) |
| 철도역사 대합실 |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|
| 대규모점포 |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|
| 국공립 보육시설 |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|
|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·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· 노인전문병원 |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|
| 찜질방 |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|
| 산후조리원 |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|
| 장례식장 |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|